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783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유장미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10.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24954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이 2020.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2020. 11. 13.경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알게 되어 2020. 11. 2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위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은 2020. 10. 25. 피고의 동거가족이 아닌 제3자(세입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2020. 12. 11.에서야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6. 7. 18. C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상거래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35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7. 17.로 하여, ② 2016. 7. 18.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할 중소기업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7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7. 17.로 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한편, C의 대표이사였던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C이 2018. 1. 3.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 등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8. 5. 10. D에게 334,957,088원을, 2018. 6. 18. 중소기업은행에게 166,070,70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C,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12416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2.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156,125원(= D에 대한 잔존 대위변제금 165,874,095원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잔존 대위변제금 334,281,792원 + 확정손해금 238원) 및 그 중 334,281,792원에 대하여는 2018. 5. 10.부터, 165,874,095원에 대하여는 2018. 6. 18.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8. 3.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B은 2017. 10. 2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0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B의 적극재산은 별지2 '적극재산표' 기재와 같이 1,196,547,000원이고, 소극재산은 별지3 '소극재산표' 기재와 같이 930,450,555원이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17.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96,000,000원으로 된 인천지방법원 2009. 4. 6. 접수 제23001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인천지방법원 2009. 4. 6. 접수 제23002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피고는 2017.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12. 8. 접수 제4612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F에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52,800,000원으로 된 2017. 12. 8. 접수

제46128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채권자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 420,000,000원에서 종전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36,000,000원(= 96,000,000원 + 240,000,000원)을 제외한 8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7. 10. 20.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연대보증) 채권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불과 2개월여가 지난 2018. 1. 3. C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가 D,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금 등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C 및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2, 3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0. 20.경 B의 적극재산은 1,196,547,000원이고 소극재산은 930,450,555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제외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약 54,000,000원{54,096,445원 = 적극재산 984,547,000원(= 적극재산 1,196,547,000원 - 일반채권자에게 책임재산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212,000,000원) - 소극재산 930,450,555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남게 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가정적으로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가정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12. 8.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294,000,000원을 대출받아 B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B으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고, B에게 2017. 11.경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상당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의 직원 또는 B의 지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C 및 B의 열악한 재정상태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징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토지 및 건물 등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이대로, 판사 이혜선

